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
설립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
설립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4일

3. 제안이유

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, 업종 고도화 촉진, R&D(연구개발),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○ 혁신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3조)

-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, 창업활동 및 기업 관련 회의·세미나·전시회 지원, 유관기관 유치 등 명시

○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(안 제4조~안 제6조)

- 사용허가 절차, 사용료 부과 및 감경 기준 규정

○ 시설 사용 제한 및 주차료(안 제7조~안 제8조)

-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사용의 제한 근거 및 주차료 부과 규정

○ 민간위탁 근거 및 운영 지원 체계(안 제9조~안 제11조)

- 관리·운영 업무의 민간위탁 및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 근거 마련

○ **지도·감독 권한(안 제12조)**

- 도지사의 지도·감독 권한 명시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법적 타당성

- 본 조례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에 부합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¹⁾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센터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충족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²⁾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함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³⁾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, 센터의 R&D 지원 및 창업기업 육성 업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기준을 충족함.
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9조⁴⁾에 따라 혁신지원센터 시설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.

나. 정책적 필요성

○ 지역경제 활성화

-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, 연구개발과 창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투명성

- 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도지사의 지도·감독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3)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
4) 제29조(대부료의 요율)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4.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·단체·법인·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
다. 절차적 적정성

- 제42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조례안보다 먼저 상정된 것은 절차상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, 본 조례안을 통해 법적·행정적 기반이 보완됨.
- 다만,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,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- 아울러,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며,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하고, 도지사의 지도·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및 운영 성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시행규칙 및 내부 규정을 통해 구체화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.